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친환경 도 | 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친       |
| 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    | 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           |
| 심의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    |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           |
|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제23조     | 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(이           |
|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    | <u>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</u> |
| 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(이하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       |
|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그 업무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를 수행한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   |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한다.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 략)    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| ③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|
| 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제24조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분의 2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u>다.</u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 성북구의회 의원 1명
- 2.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
- 3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

  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
   자
- 4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
  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   5.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
   받은 자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구의회의원·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.

<u>제6조(위원장의 직무)</u>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
<신 설>

|                    |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 |
|                    |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③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은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「성북구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」을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 준용한다.</u>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  |
|                    |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|
|                    | 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수 있다.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경우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2.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  |
|                    |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경우</u>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장기 불 |
|                    | 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4.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| 제9조(수당) 구청장은 예산의 범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안에서 출석위원에게 수당 등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제5조</u> ~ <u>제9조</u> (생 략) | <u>제10조</u> ~ <u>제14조</u> (현행 제5조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터 제9조까지와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(준용) 보조금의 교부 등에           | <u>제15조</u> (준용)                   |
| 관해서는 <u>「서울특별시 성북구</u>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보조금 관리조례」</u> 의 규정을 준      | <u>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</u>               |
| 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제11조</u> (생 략)             | <u>제16조</u> (현행 제11조와 같음)          |